

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0. 12.11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 대책본부 홈페이지,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사례정의

* 출처 :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지침

연 번	구 분	내 용
1	확진환자	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2	의사환자	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3	조사대상 유증상자	<p>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</p> <p>* 주요 임상증상 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인후통, 후각 또는 미각 소실, 폐렴 등</p>

■ 검역대응 절차

구 분	검역조사 절차
유증상자 (내국인, 외국인 모두 포함)	1. 진단검사 실시(공항 내 임시대기시설) 2. 판정 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 : 자가격리 / 단기체류 외국인 : 시설격리
무증상자	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 1. 자가격리 실시(14일, 의무적) 2. 입국 3일이내 진단검사(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) 3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자가격리 지속
	1. 공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(임시생활시설 입소) 2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시설격리 ☞ 시설격리 이용료 기준 1일 최대 15만원 (시행 2020.06.23.)
격리 면제 대상자 <small>* A1(외교), A2(공무) 또는 입국 전 한국 대사관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</small>	1. 공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(임시생활시설 대기) 2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능동모니터링,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
특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7.13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기준4개국에서 추가로 2개국을 지정 (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+우즈베키스탄, 필리핀)○ 7.20일부터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입소 시, 입소 10일차, 입소 14일차 또는 퇴소 시 등 총 3차례 진단검사 진행 (4주간 실시,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)○ 9.1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해 안산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(1인당 140만원 징수)○ 8.3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 출항 모든 선박의 선원은 'PCR음성확인서' 의무 제출해야함.○ 8.17(월)부터 방역조치를 우회하는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 자부담○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- 적용대상 및 시기 :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(824 0시 이후 입국자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중도 출국 제한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 입소자 희망 시 중도 출국 허용 - (변경 후) 98부터 입소자 중도 출국 불허 <p>※ 단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(건강 상 이유, 가족의 임종, 장례식 참석 등)의 인도적 목적 등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 하에 예외적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원 조기 최소 및 출국출항은 기준과 동일하게 허용 ○ 우즈베키스탄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CR 검사확인서 영시확인제 도입 - 발열기준 강화 : 37.5°→37.3° - (유증상자) 본인 외 동행자도 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- (무증상자)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임상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<p>※ 검사 후 △ 음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△ 음성일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장소확인 후 자가격리</p>
--	---

■ 해외에서 입국 시 이동안내(서울 거주자 한함)

* 출처 :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

① 자차 이용안내

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	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<p>* 여권, 항공권 지참</p>	진단 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	14일간 자가격리! <p>*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</p>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②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 (이용료는 자부담 6만 5천원~13만원, 구역별 정액요금, 24시간 운영)

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 <p>▶ T1은 12~13번 게이트 중간 ▶ T2은 2~3번 게이트 중간</p>	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<p>* 여권, 항공권 지참 * 당일검사가 어려울 경우, 예약 후 익일검사</p>	승객 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 <p>*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.</p>	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! <p>*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</p>
--	---	--	---

③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 (이용료 : 16,000원)

입국 수속 후, 인천공항 T1(1층), T2(지하1층) 대합실 이동	노선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 <p>▶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, 진단검사 및 자택 이동 등에 활용 (하차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없는 부득이한 경우, 구청차량 요청가능)</p>	버스탑승 및 자치구별 하차지(보건소 선별진료소) 로 이동	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 주지로 이동 <p>(개인차량을 우선이용 권고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)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■ 해외입국자 입국시 이동관련 주의사항 안내

*출처:중앙방역대책본부

구 분	내 용
해외에서 항공기 탑승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, 탑승하지 않기 ○ 배웅객이 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○ 항공기 탑승 시간에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혼잡 피하기 ○ 항공기 예약 및 발권은 가능하다면 무인기기 이용하기
항공기 탑승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기 내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기내식 등 음식섭취 시에는 대화자제 ○ 화장실 등 항공기 내 공용 공간 사용 전후 손소독 하기
국내 입국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○ 개인수하물 찾기 전, 후 손소독 하기 ○ 이동 시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자자체 제공 수단, 전용 버스·열차·택시 등 이용하고 손소독 철저, 음식섭취 및 대화 자제 ☞ 차자 이동 시 맞이객과 악수 등 신체접촉은 피하고, 뒷좌석에 앉는 등 거리두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맞이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, 이동 중 주기적으로 차량 환기 실시 ○ 거주지 도착 후에는 짐가방 등 소지품 표면 소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입국자 탑승 차량 좌석과 손잡이 등 손이 닿은 곳의 소독 실시 ○ 격리통지서 발급 시 안내된 격리수칙(자가, 시설 등)철저히 준수하기

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제도 12월10일부터 시행

*출처: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구 분	내 용
도입목적	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·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
신고 시기	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른 '관심' 이상의 위기정보'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'에 따른 '주의'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
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	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숙박업자의 신고의무	외국인이 숙박할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신고방법	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, 전화,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고

*경보단계 : '관심', '주의', '경계', '심각'

**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

***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,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, 외국인 관광 도심민박업,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
※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(www.hikore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